

입됩니다.

● 제1 국민역 편입자 조사

구 분	방 법
국내거주자	○ 행정자치부 “주민전산자료” 활용 17세 11월 30일까지 자료 송부(병무청)
국외거주자	○ 재외공관 “병역의무자 명부” 활용 17세 11월 30일까지 명단 송부(병무청) ※ 병역의무자: 18세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 또는 기간연장 허가신청서 제출 ※ 국외 영주권 취득자, 무기한(최장기) 체류자격 취득자는 사실증명서 제출

3. 징병검사

● 징병검사 대상자

징병검사 대상자는 ①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사람, ② 징병검사 연기자중 그 사유가 해소된 사람 및 ③ 기타 법령에 의거 징병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 징병검사 연기

대 상	제 출 서 류
국외에 체재 또는 거주하고 있는 사람	지방병무청(사무소)장이 직권연기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4. 병역처분 기준

● 징병검사 대상자

질병·심신장애가 없거나 장애정도가 가벼워 군복무에 적합한 경우	➔	1~4급	- 합격
질병 또는 심신장애 정도가 심해 군복무에 부적합한 경우	➔	5급] 불합격]
질병 또는 심신장애 정도가 아주 심해 모든 병역의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	6급 (병역면제)	
현재 질병을 치료 중이어서 일정기간 경과후 재검사가 필요한 경우	➔	7급 (1년이내종결)	

● 학력 및 신체등위에 따른 병역처분 기준

구 분	1 급	2 급	3 급	4 급	5 급	6 급	7 급
고졸이상	현역						
고퇴~중졸	보충역					병역면제	재신체검사
중학중퇴이하	제 2 국 민 역						

● 학력이 높거나 건강해도 병역이 감면되는 경우

부·모 또는 형제·자매중 전몰군경·순직군인 및 상이정도가 6급이상인 전상군경·공상군인이 있는 경우, 6월 이상 1년 6월 미만 실형선고자, 1년이상 수형자 중 집행유예선고자 등

➔ 보충역

· 1년 6월 이상 실형선고자 · 고아·귀화자
· 외관상 식별이 명백한 혼혈아 등

➔ 제 2 국민역

● 공익근무요원 소집

① 대 상

구 분	임 무(복무분야)	복무기간
행정관서 요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 시설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경비·감시·보호·봉사 또는 행정업무 등의 지원업무	26개월
국제협력 봉사요원	개발도상국가에 파견, 한국어 교육 및 경제, 사회, 문화발전 등 지원분야 근무	30개월
예술·체육 요원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을 위한 예술·체육분야의 해당 특기분야 근무	34개월

●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편입

② 대 상

구 분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석사이상 학위소지자 (단,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은 중소기업부설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자연계 학사이상 학위소지자) • 지정업체로 선정된 자연계 대학원에서 박사 과정을 수학중인 자 	(현역병입영대상자) 지정업체 종사자로서 기술·기능 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해기사 면허소지자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 지정업체의 제조·생산분야 종사자 ※ 기술자격이 없어도 편입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계농·어업인, 농업회사법인의 농업기계운전요원 및 사후봉사업체의 농업기계 수리요원 (기술계 기술자격) • 국제기능경기대회 3위이상 입상자 	
의무종사	4년	34개월	26개월

5. 병역의무 연기

● 재학생 입영연기

국내대학(원) 재학생은 학교별 제한연령 범위내에서 졸업할 때까지 별도의 조치없이 자동으로 입영이 연기됩니다.

학 교 별	전문대학		대 학		대 학 원	
	2년제	3년제	4년제	6년제	2년제	5·6학기제
제한연령	22	23	24	26	26	27

- ※ 고등학교 학생은 연령에 관계없이 졸업시까지 입영연기 가능
- ※ 박사과정 및 의과대학대학원, 치과대학대학원, 한의과대학대학원 및 수의과대학 대학원은 28세까지 연기 가능
- ※ 해외유학생은 국내 대학에 1년을 더한 기한까지 연기 가능

● 기타 연기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발생하였거나 각 군 모집에 응시중인 자 또는 대학입시 준비 중인 수험생(20세까지)은 구·시·읍·면에 입영기일 연기원을 제출하면 연기가 가능합니다.

6. 국외여행허가

● 허가대상

- ① 18세 이상의 제1국민역(현역병 입영대상자 등)과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 또는 공익근무요원
- ②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으로서 의무종사기간을 마치지 아니한 사람
- ③ 공중보건 의사, 징병전담 의사, 국제협력 의사, 공익법무관, 예비역장교 또는 부사관

으로서 의무종사기간을 마치지 아니한 사람

④ 기타 입영의무 등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군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사람

● 허가기관 및 구비서류

허가기관은 일반적으로 거주지의 지방병무청이나,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은 직장 소재지 관할 지방병무청, 단체여행의 경우는 단체의 소재지 관할 지방병무청, 단 기여행의 경우에는 접수지 지방병무청도 이에 해당됩니다. 국외여행 허가를 위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국외여행 허가원서 1부

② 귀국보증서 : 호주 또는 부모중 1인과 기타 1인 이상으로 연대보증하되, 연간 순수 재산세 또는 종합 토지세 합계액이 30,000원 이상 납부자로서 보증인들의 재산세액 합계액은 150,00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호주 또는 부모가 재산이 없거나 기준액(연간 30,000원)에 미달될 때에는 귀국보증서에 호주 또는 부모의 인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며 기준에 해당하는 기타 귀국보증인 2인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선원·국외취업·경기참가자는 15,000원 이상 납부자로 보증인을 선정할 수 있으나 보증인 2인의 합계액은 30,000원 이상이어야 함) 호주, 부모를 제외한 다른 귀국보증인 선정이 곤란한 사람은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귀국보증보험증권으로 기타 보증인을 대체 가능합니다.

③ 귀국보증인의 인감증명서와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및 과세증명서 또는 납부영수증 사본

④ 기타 병역법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서류

병역법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서류

1. 국제경기(전지훈련을 포함한다) 및 해외공연에 참가하는 경우 : 문화관광부장관, 학교장, 대한체육회장 또는 소속 프로경기단체법인의 추천서
2. 연수·견학 및 문화교류의 경우 : 해당 기관의 계획서 또는 허가서

병역법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서류

3. 국외파견 및 국외출장의 경우 : 소속기관 또는 지정업체의 장의 국외출장 증명서 또는 파견명령서
4.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및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 근로계약서
5. 국외취업의 경우 : 재외공관의 장이 확인한 취업증명서
6. 질병치료의 경우 : 영 제1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병무청장이 지정한 의료기관 또는 수술을 한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한 병사용진단서
7. 국외이주의 경우 : 외교통상부장관이 발행한 해외이주신고확인서
8. 유학의 경우 :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9. 해외에서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 : 부모의 취업증명서 또는 사업증명서
10. 그 밖에 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출국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대상

지방병무청장의 허가를 받고 출국한 자중 허가기간 내에 여행목적은 완수하지 못하고 계속 국외에 체재하고자 하는 사람과 17세 이전에 출국한 자와 국외에서 출생한 자로 병역의무가 발생된 자(18세)중 계속 국외에 체재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 대상이 됩니다.

● 접수기관 및 접수기일

기간연장신청은 재외공관에 접수하며, 거주지의 지방병무청에서 허가합니다. 접수는 허가기간 만료 15일전까지이나 17세 이전 출국자는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입니다.

● 구비서류

- ①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신청서(재외공관에 비치)
- ② 체재목적 인정증명서(예: 재학증명서, 취업증명서 등)

③ 귀국보증서(소정양식)

④ 보증인의 인감증명서와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 과세증명서

* 귀국보증서 및 보증인의 인감증명서와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 과세증명서는 국내에서 보완이 가능함.

● 처리절차

재외공관에 접수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신청서는 재외공관장이 서류를 확인 후 원본서류는 보관하고 외교전산망을 통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전송하고, 지방병무청장은 전송자료에 의하여 체재 목적의 타당성 여부를 심사, 국외여행기간 연장 처리하고 그 결과를 재외공관 장에게 전송하면 재외공관장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기간까지 여권 유효기간을 연장합니다. 다만, 국내에 일시적으로 귀국한 사람과 선위으로서 항해중에 있는 사람은 재외공관의 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외 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불허된 사람은 즉시 귀국하여야 합니다.

8. 국외여행 관련규정 위반시의 제재

● 신고 불이행

국외여행신고규정에 의한 신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사람과 출국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지게 됩니다.

● 국외여행허가 관련 규정위반

국외여행허가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외로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며, 40세까지 국내에서 사회활동을 제한받게 될 뿐만 아니라

35세까지 병역의무부과 대상자로 관리됩니다. 법의 규정에 의한 귀국명령에 위반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도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미귀국자 가족 및 보증인의 책임

지방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된 기간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증인에게 5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9. 외국영주권자 및 이중국적자에 대한 특칙

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병역의무자 또는 그 부모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역의무자 본인이 국내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할 때 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하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 ① 국외에서 영주권을 얻은 사람(조건부 영주권을 얻은 사람은 제외)이나 영주권제도가 없는 나라에서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최장기 체류자격을 얻은 사람
- ② 1963년 11월 30일 이전에 일본국에 입국한 사람으로서 특별체류자격을 얻은 사람
- ③ 기타 국외에서 거주가 가능하다고 병무청장이 인정한 사람

위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재외공관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①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한 사람
- ② 1년이상 국내에서 체재하고 있는 사람, 이 경우 국내체재기간은 입국일부터 기산

하며, 국내체재중 출국후 6개월 이내 재입국한 경우에는 다음의 사람을 제외하고
 는 국내에서 60일 이내의 기간을 체재하는 경우 계속하여 국내에 체재한 것으로
 간주됨

- 학생으로서 방학기간중 모국방문

- 외국회사 취업자의 국내출장(외국회사의 국내지사 근무자를 제외한다)

- 본인의 혼인,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직계존속·직계비속의 장례·회갑 또
 는 혼인에의 참석

-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에서 주관하는 운동경기에 선수 또는 임원으로의 참가

③ 입영연기가 가능한 국내교육기관에서 수학중인 사람으로서 그 학교를 졸업·휴
 학·퇴학·제적하고 1년이상 국내에 체재하고 있는 경우와 수학기간을 포함하여
 1년이상 국내에 체재하는 사람으로서 그 부·모 또는 처가 1년 이상 국내에 체재하
 는 경우

④ 국내취업 등 병무청장이 고시하는 영리활동을 하는 사람



다. 병역면제처분 및 병역의무 재부과

● 병역면제처분

국외에서 가족과 같이 영주권 또는 영주권제도가 없는 나라에서 무기한 체류자격을 얻은 사람은 병역면제원서를 재외공관장에게 제출하면 병무청장으로부터 면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병역의무 재부과

위와 같은 사유로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자가 위 '나' 항에 기재된 사유에 해당될 때는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외국민 2세 이상인 사람(부·모·본인이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로서 국외에서 출생, 또는 6세 이전에 출국하여 18세까지 계속 국외에 거주하는 경우)은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하지 않는 한 계속 병역면제대상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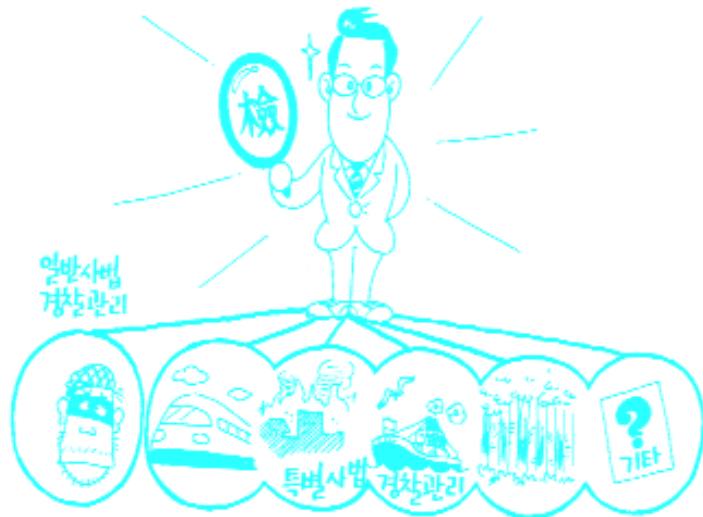
제10장 형사사건 처리절차

1. 형사사건과 수사

가. 개 요

국가는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일정한 종류의 반사회적 행위에 대하여 법률로 규정하여 형벌을 부과하는데 이러한 사건을 형사사건이라고 하며 범죄가 성립되는지 가리기 위하여 형사사건을 조사하는 절차를 수사라고 합니다.

모든 수사의 최종책임자는 검사이며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합니다. 사법경찰관리에는 경찰서에서 일반 형사사건을 취급하는 일반사법경찰관리와 철도공안, 소방, 해사, 산림 등 특별한 사건만 수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있습니다.



나. 수사개시

수사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범인, 범죄 사실과 증거를 조사하여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는 단서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범죄신고 또는 고소·고발을 받거나 풍문 또는 신문기사를 보고 수사를 시작할 수도 있으며 우연히 범죄를 목격하고 수사를 개시하기도 합니다.

다. 고 소

● 고소의 의의

범죄의 피해자 등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고소라고 합니다. 고소권을 가진 사람은 모든 범죄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그리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입니다.

● 친고죄

범죄 중에는 피해자의 프라이버시나 범인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고소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가 있는데 이것을 친고죄라고 합니다. 강간죄, 간통죄, 모욕죄 등이 그것이며 일정한 범위의 친족간에 범한 절도죄, 사기죄 등의 재산범죄도 이에 해당됩니다. 친고죄와 달리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죄가 있는데 이를 반의사불벌죄라하며 명예훼손죄, 폭행죄 등이 그것입니다.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고소는 1심판결 선고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나, 한번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공범이 있는 경우에는 고소인 마음대로 일부만 고소하거나 취소할 수 없고 공범 전부를 상대로 고소와 취소를 하여야 합니다.

고소는 수사기관에 하여야 합니다.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국회의장, 감사위원장 등 수사기관이 아닌 고위공직자에게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은 해당 수사기관으로 고소장이

전달되기는 하지만 전달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그만큼 수사가 지연되어 고소인에게 불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 고소·고발의 각하

무익한 고소·고발의 남용·남발에 따른 피고소인·피고발인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고소인·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기재된 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음이 명백한 고소·고발사건의 경우에는 검사가 피고소인·피고발인을 불러 조사하지 않고도 각하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고소인은 검사가 고소사건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하게되면 그 처분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고,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고등검찰청과 대검찰청에 항고 및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 무고죄

고소인은 있는 사실 그대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것은 국가기관을 속여 죄가 없는 사람을 억울하게 처벌받게 하려는 것이므로 엄벌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라. 입 건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한 때에는 수사기관에 비치된 '사건부'에 기재하게 되는 데 이를 '입건'한다고 하며 이와같이 입건되어 수사대상이 된 사람을 '피의자'라고 합니다. 범죄가 일어났을 때 범인이 아닌가 하는 상당한 의심이 가는 사람이 있으나 범인이라는 뚜렷한 증거가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경우 그 사람을 흔히 '용의자'라고 부르며, 이에 대하여 조사가 더 진행되어 범죄의 혐의가 인정됨으로써 정식으로 입건되면 그때부터는 위에서 말한 피의자의 신분이 되는 것입니다.



마. 체 포

● 일반체포

입건된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 체포를 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판사가 발부한 체포영장이 있어야 하며,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하여는 먼저 검사에게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검사는 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게 되는데, 명백히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나 판사가 체포영장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 긴급체포

수사기관은 범죄가 무겁고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긴급한 사정이 있어서 판사로부터 체포영장을 발급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는데 이를 긴급체포라고 합니다. 사법경찰관이 피의

자를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현행범인 체포

범죄를 실행중이거나 실행한 직후에 있는 자를 현행범인이라 하는데, 현행범인은 수사기관이 아니라도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인도하여야 합니다.

체포 또는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수사기관이 계속 구금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며, 그 기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또는 현행범인 체포의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 받지 못한 때(긴급체포의 경우)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합니다.

바. 구속과 불구속

수사기관은 수사를 한 결과 범죄가 무겁고 죄질이 나쁘며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도망 또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속을 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증거가 있어야 함은 물론 반드시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이 있어야 합니다. 구속영장의 청구절차 및 방법은 체포영장의 경우와 같으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나 판사가 영장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사.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의 범죄혐의 유무를 조사하여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피의자를 구속하게 됩니다.

이 경우 피의자는 수사과정에서 변명의 기회를 가지는 것은 물론이고, 구속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판사 앞에서 변명의 기회를 가지는데, 이 제도가 바로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입니다.

피의자들 중 현행범인이나 체포영장, 긴급체포의 방식으로 수사기관에 체포된 피의자는 위와 같은 구속전 피의자신문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피의자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호주,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고용인은 피의자와 별도로 구속전 피의자신문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피의자나 변호인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판사가 반드시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피의자를 심문하지 않아도 구속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심문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체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에는 피의자나 변호인, 가족 등에게 심문신청권을 부여하지 않고 판사가 직권으로 심문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심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 심문을 실시합니다. 이 경우 판사가 심문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피의자가 심문을 위하여 심문을 위한 구인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법원에 구인한 후 심문을 실시하게 됩니다.

아. 송 치

형사사건으로 입건된 모든 사건은 검사만이 수사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한 경우에는 그가 수사한 모든 사건에 대하여 기록과 증거물을, 그리고 구속한 경우에는 피의자까지 검찰청으로 보내야 하는데 이를 송치라고 합니다.

피의자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검찰청에서 또 부르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궁금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검사만이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송치할 때 그 동안의 수사결과를 종합하여 의견(예컨대 기소, 불기소 등)을 붙여서 송치하는데, 이 의견은 검사가 수사를 종결하는데 참고는 되지만 반드시 그 의견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제도

일단 영장에 의하여 수사기관에 체포 또는 구속되었다고 하더라도 피의자는 법원으로부터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를 다시 심사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절차에서 체포 또는 구속이 부당하다고 하여 법원이 석방을 명하면 피의자는 즉시 석방됩니다.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의 청구는 피의자 본인이나 변호인은 물론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가족 나아가 동거인이나 고용주도 피의자를 위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은 사건이 경찰에 있는가 검찰에 있는가를 가리지 아니하고 검사가 법원에 기소를 하기 전이면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소후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되는 보석제도와 다릅니다.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을 청구받은 법원은 지체없이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를 조사하여 결정을 하여야 하는데 청구권자 아닌 자가 청구하거나 동일한 영장에 대하여 재청구한 때, 수사방해의 목적이 분명한 때 등에는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에 대하여도 직권으로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는데, 이를 피의자보석제도 또는 기소전보석제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2. 검사의 처분

가. 기 소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이나 직접 인지하여 수사한 사건에 대하여 피의자가 재판받을 가능성이 마땅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법원의 재판에 회부하게 되는데 이를 공소제기 즉 기소한다고 하며, 검사에 의하여 기소된 사람을 피고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검사가 피의자에 대하여 징역형이나 금고형으로 처벌하는 것보다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기소와 동시에 법원에 대하여 벌금형에 처해 달라는 뜻의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약식기소라고 합니다. 검사가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약식기소를 하는 경우에는 석방을 하여야 합니다.

약식기소가 있는 경우 판사는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사기록만으로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판사가 약식절차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정식 재판에 회부하여 공판을 열어 재판을 할 수도 있습니다. 판사는 검사가 구형한 벌금의 액수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가감하여 형을 정할 수 있는데, 피고인이나 검사는 판사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7일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검사는 약식기소를 할 때 형 확정후 집행의 편의를 위하여 구형에 해당하는 벌금 상당액을 피고인으로부터 미리 예납받고 있는데 벌금을 예납한 피고인은 약식명령에 기재된 벌금을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 불기소

검사가 사건을 수사한 결과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데 이를 불기소처분이라고 합니다. 여러가지 불기소처분 가운데 중요한 것으로는 기소유예와 혐의없음 처분이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이에 관해서만 자세히 설명합니다.

● 기소유예

기소유예 처분은 죄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나 수단, 범행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기소를 하여 전과자를 만드는 것보다는 다시 한번 성실한 삶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고 용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기소유예에 대하여 한 가지 유의할 점은 통상적으로 한번 기소유예 처분을 한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이 관례이지만, 만일 기소유예를 받은 후에 잘못을 반성하지 못하고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검사는 기소유예 처분한 범죄에 대하여 새로 기소를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 혐의없음(무혐의)

혐의없음 처분은 검사가 수사한 결과 피의자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범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 내리는 처분입니다. 물론 혐의없음 처분을 한 후에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다면 검사는 기소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해당되어 혐의없음 처분을 한 경우에는 형사상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할 뿐 민사상의 채무까지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님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3. 형사재판 및 형의 집행

가. 재 판

● 재판일반

법원은 검사가 기소한 사건에 대하여 공판을 열어 공개리에 심리를 하게 되는데 피고인은 자기의 억울함이나 정당함을 주장할 수 있고 또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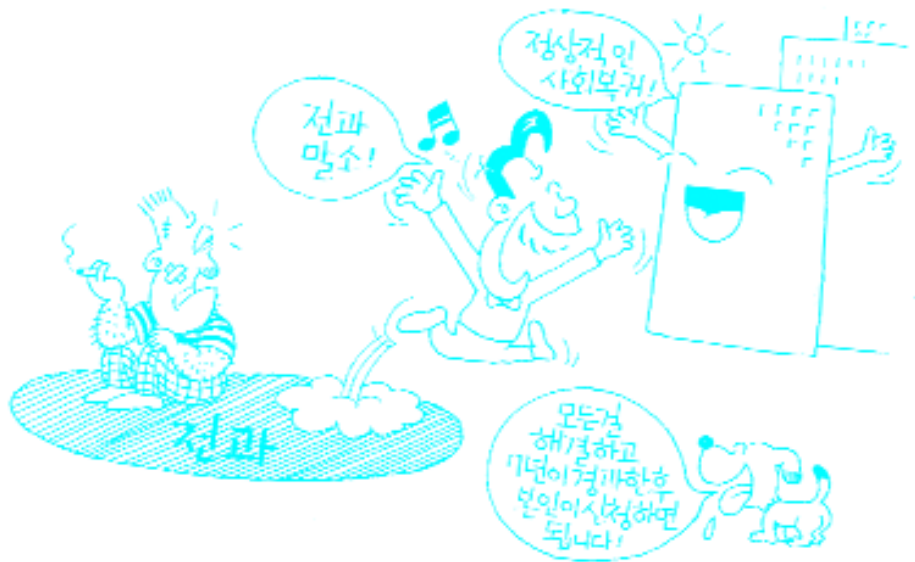
재판은 사건에 따라 판사 한 사람이 하기도 하고 판사 3인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하기도 하는데 원칙적으로 단기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사건은 합의부의 관할입니다. 단독판사가 한 재판에 대하여는 지방법원의 항소부에, 합의부에서 한 재판에 대하여는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고, 지방법원 항소부 및 고등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다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 유죄의 판결

심리결과 피고인의 죄가 인정되면 판사는 유죄의 판결을 선고하는데 정상에 따라 실행형을 선고하는 수도 있고 집행유예를 붙여주거나 선고유예를 하는 수도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선고하면서 일정 기간 그 형의 집행을 미루어 두었다가 그 기간 동안 재범을 하지 않고 착실히 살면 형의 선고를 실효시켜 아예 집행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어 두었다가 일정기간 무사히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 무죄의 판결

기소한 사건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으면 판사는 무죄를 선고합니다. 구속되었다가 법원에서 무죄의 판결을 받거나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기소유예 처분은 제외)을 받은 사람은 형사보상법에 따라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보 석

검사에 의하여 구속기소된 피고인은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에 보증금을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석방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보석이라고 합니다. 보석보증금은 현금으로 납부하지 않고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보석은 피고인은 물론 변호인과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재산 정도와 범죄의 성질, 증거 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보증금을 납부할 것과 주거를 제한하는 등의 조건을 붙여 보석을 허가하는 것이 보통이며, 피고인 등의 청구가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허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거나 상습범인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 증인 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보석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에 대하여도 직권으로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음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다. 형의 집행

법원에서 선고된 형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집행하는데 징역이나 금고형은 교도소에 집행합니다. 그리고, 벌금형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1일 이상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노역장에 유치하게 됩니다.

라. 가석방과 형집행정지

● 가석방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집행중에 있는 사람 가운데 복역성적이 양호하고 뉘우침이 있는 때에는 무기형에 있어서는 10년, 유기형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에 법무부장관이 가석방할 수 있습니다.

가석방기간은 무기형에 있어서는 10년으로 하고, 유기형에 있어서는 남은 형기로 하되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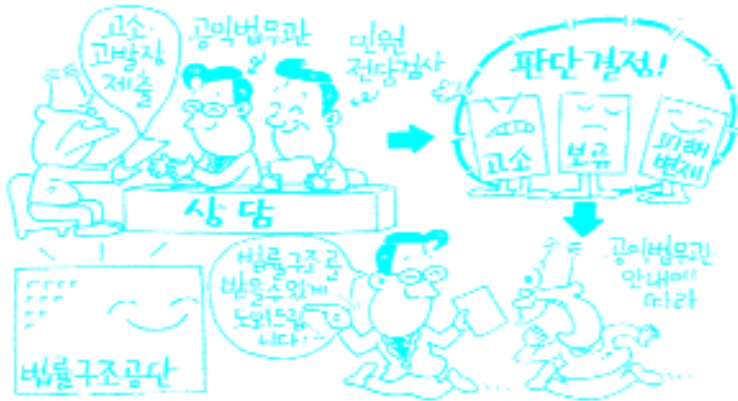
가석방된 사람은 가석방기간중 보호관찰을 받는데, 가석방규칙을 어기거나 다시 죄를 저지르면 가석방이 취소 또는 실효되어 남은 형기를 마저 복역하여야 합니다.

● 형집행정지

형의 집행으로 생명을 보전할 수가 없거나 잉태 후 6개월 이상인 때 또는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검사는 형집행을 정지시키고 석방할 수 있습니다.

마. 전과 관리 및 형의 실효

한번의 잘못으로 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일정기간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전과를 말



소하여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보장합니다. 즉, 징역 또는 금고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이 신청을 하면 재판의 실효를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이 신청절차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가에서 「형의 실효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형의 집행을 종료 또는 면제받은 후 일정기간 동안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형을 실효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은 3년을 초과하는 징역 또는 금고는 10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는 5년, 벌금은 2년이고, 구류나 과료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즉시 실효됩니다.

4. 피해자보호 및 형사보장제도

가. 형사사건과 피해보상

범죄를 저질러 남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은 적절히 피해를 보상해 주고 합의를 하는 것이 도리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검사나 판사는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합의를 권유하고 또 합의를 하면 이를 참작하여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러나, 피해보상은 근본적으로 민사문제이므로 형사사건에서는 처분이나 양형에 참고가 될 뿐이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합의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검사나 판사의 권유에 따라 적절한 피해보상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제도를 이용하거나 민사재판을 통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 배상명령제도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신속, 간편하게 민사적인 손해배상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배상명령제도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는 형사사건은 상해, 폭행,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재물손괴죄 등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정한 금액의 손해배상을 하기로 합의하고도 약속을 지키지 않은 때에는 위에 해당하지 않는 죄에 대하여도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은 위에 정한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만이 신청할 수 있으며, 범인이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법원에 2심 공판의 변론종결전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배상명령의 신청범위는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에 한정되므로, 그 이상 예컨대 위자료까지 배상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배상명령은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하는데,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문은 민사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 민원의 실질적 해소방안

「민원의 실질적 해소방안」은 민원인의 고소·고발에 대하여 검찰이 형사절차와 별도로 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합의, 소송 등으로 피해를 변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로서 2000년 4월 1일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소·고발의

내용이 빌린 돈을 갚지 않는 경우, 임금을 주지않는 경우, 공사대금 등 대금지불을 하지 않는 경우 등 민사적 해결이 가능한 사안에 적용됩니다. 다만, 민원인이 뒤에서 설명하는 법률구조대상자에 해당할 경우에 한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검찰청에 직접 고소·고발을 제기하는 경우

고소·고발장이 검찰에 제출하면 민원전담검사 혹은 공익법무관이 민원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민사사안 해당여부를 검토하고, 민사사안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민원인을 상대로 고소·고발의 유지·취소 여부 또는 고소·고발과 함께 민사적 피해변제를 받을 것인지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이에 대해 민원인은 자유로이 자신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으며, 민사적 피해변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공익법무관의 안내에 따라 관할 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피해변제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경찰에 고소·고발을 제기한 후 검찰에서 수사중인 경우

수사 중인 사건의 주임검사로부터 민사적 피해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받아 공익법무관과 상담하고 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피해변제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1) 범죄피해자 구조제도의 의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장해를 입고도 가해자를 알 수 없거나 가해자에게 자력이 없는 관계로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받지 못하고,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국가에서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일정한 한도의 구조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수사 또는 형사재판절차에서 고소·고발이나 증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보복범죄를 당한 경우에는 구조요건이 일반범죄의 구조요건보다 완화되어 가해자의 불명 또는 무자력, 피해자의 생계곤란 여부와 관계없이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

첫째, 유족구조의 경우는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의 유족 중에서 피해자의 사망당시 피해자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배우자, 자, 부모, 손, 조부모, 형제자매입니다.

둘째, 장해구조의 경우는 위와 같은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신체장해를 당한 사람으로 신체장해등급 기준상 1급내지 3급의 장해에 해당하여 노동능력을 100% 상실한 사람입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① 피해자와 가해자간에 친족관계(사실혼관계 포함)가 있는 경우
- ② 피해자가 범죄행위를 유발하였거나 당해 범죄피해의 발생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 ③ 기타 사회통념상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한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국가배상법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한 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나,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내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 구조금의 지급신청 절차

구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주소지 또는 범죄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에 설치된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범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거나,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4) 구조금액

유족구조금은 1,000만원을 지급하고, 장해구조금은 장해의 정도에 따라 1급은 600만원, 2급은 400만원, 3급은 300만원을 지급합니다.

한편, 피해자의 장해정도가 명확하지 않거나 그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신속하게 구조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는 피해자의 응급구제를 위하여 유족구조금은 200만원, 장해구조금은 100만원의 한도 안에서 가(假)구조금을 우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마. 특정범죄신고자 등 구조제도

(1) 특정범죄신고자 등 구조제도의 의의

국민이 안심하고 자발적으로 특정범죄에 대한 신고 등을 할 수 있도록 범죄 신고로 인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신고자 또는 친족 등에게 국가가 보좌인을 지정하고, 경찰서장 등으로 하여금 신변안전조치를 취하게 하는 한편, 생활비 지급 등을 통해 범죄신고자 등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제도입니다.

본 제도상의 '특정범죄'는 다음의 범죄를 말합니다.

- ① 살인·약취와 유인·정조(강간 등)·강도·범죄단체의 구성 등에 관한 죄중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는 범죄
- ② 마약류 수출입·제조·매매나 매매의 알선 등 마약류 불법거래에 해당하는 범죄
- ③ 폭력행위 또는 절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가입 또는 그 단체의 활동과 관련하여 행한 범죄

(2) 구조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

특정범죄에 관한 신고·진정·고소·고발 등으로 인하여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나 재산 등에 대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범죄신고자 또는 그와 밀접한 인적관계에 있는 친족·동거인 등이 그 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구조의 방법 및 신청절차

● 보좌인 지정

보좌인이란 당해 형사사건의 수사·공판과정에 동행하거나 조인하는 등 필요한 조력을 할 수 있는 자로서 범죄신고자 등의 법정대리인, 친족, 학교 또는 사회보호시설의 장이나 직원, 법률구조 등 상담시설의 장이나 직원, 고용주 등이 범죄신고자의 보좌인이 될 수 있습니다.

범죄신고자 또는 친족 등이 직접 관할 경찰서·검찰청·법원 등에 보좌인 지정을 신청하거나 사법경찰관·검사 또는 법원이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신변안전조치

일정기간 동안의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신변 경호,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귀가시 동행 등 범죄신고자 등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말합니다.

범죄신고자 또는 친족 등이 직접 관할 경찰서·검찰청·법원 등에 신변안전조치의 신청을 할 수 있고, 재판장은 검사에게 신변 안전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법경찰관·검사는 직권으로 신변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구조금 지급

범죄신고자 또는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어 그로 인하여 중대한 경제적 손실 또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거나 이사·전직 등으로 비용을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필요가 있는 때 국가가 지급할 수 있는 금원을 말합니다.

구조금 중 치료비·이사비용·방법시설 설치비용 및 경호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로 지급되고, 생활비·전직비용 및 위자료는 월정액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일급최저임금액(2003. 9. 1~2004. 8. 31 기준 20,080원)의 5배 이하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범죄신고자 또는 친족 등이 범죄신고 등을 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범죄신고

자등구조심의회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때 보복 등을 우려하여 조서 등에 성명을 기재하지 않은 범죄신고자 등은 가명으로 구조금 지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바. 형사보장제도

(1) 형사보상제도의 의의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자는 재판확정전까지의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피의자로서 구금된 후 불기소된 자는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단, 구금된 이후에 불기소할 사유가 있는 경우, 기소중지 등 중국처분이 아닌 경우 및 기소유예, 공소보류 등의 경우는 제외).

(2) 보상금 청구절차

형사재판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은 자는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무죄재판을 한 법원에 보상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원은 보상청구가 이유있을 때 보상결정을 하게되며, 청구인은 보상결정이 송달된 후 1년 이내에 보상결정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에 보상금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단, 형사미성년자, 심신장애자 등의 사유로 무죄재판을 받은 경우, 본인이 허위자백을 하거나 또는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기소, 미결구금 또는 유죄판결을 받게 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1개의 재판에서 일부에 대하여 무죄재판을 받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재판을 받았을 경우는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로서 구금된 후 기소되지 아니한 자는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하는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 지청의 검사가 그러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지청이 속하는 지방검찰청)의 피의자보상심의회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이 허위의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구금된 것으로 인정

되는 경우, 구금기간중 다른 사실에 대하여 수사가 행하여지고 그 사실에 관하여 범죄가 성립한 경우, 보상을 하는 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피의자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보상금액

1일 보상금 상한가는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년도의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 이내에서 결정되고 전체 보상금은 1일보상금에 구금일수를 곱한 금액이 됩니다.

* 보상금 최고액 : 구금일수×최저임금액(현재 20,080원)의 5배(2003. 9. 1~2004. 8. 31 적용)

5. 범죄인인도 및 형사사법공조

범죄인인도란 한 나라의 형법 또는 형사관계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범죄인이 다른 나라에 소재하고 있어 형벌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범죄인 소재국이 형벌권 행사국의 요청에 따라 그 범죄인을 인도하는 국제법상의 제도입니다. 한편 형사사법공조란 형사사건의 수사·재판과 관련된 증거자료의 수집·제공을 위하여 국가간에 서로 협력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해외여행의 자유화로 국내 범죄인의 국외도피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다수국을 활동 무대로 하는 국제범죄가 날로 심화되고 있어 범죄인인도조약을 통한 범죄인의 신병확보와 형사사법공조를 통한 국제범죄의 공동대처 필요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1998년 6월 10일 미국과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호주, 필리핀, 스페인, 캐나다, 칠레,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멕시코, 태국, 몽골, 중국,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일본,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카자흐스탄 등 19개국과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하였고, 호주, 미국, 캐나다, 프랑스, 중국, 홍콩, 러시아, 몽골,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브라질,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태국, 베트남, 카자흐스탄 등 16개국과 형사사법공조조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